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36호
2. 발 의 자 : 서상열 의원(찬성자 29명)
3. 발의일자 : 2025년 0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II. 제안이유

- 온라인·비대면 소비 및 디지털 결제 기반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은 고령화와 디지털 격차로 인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형태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AI 기반 경영환경 구축과 상인 대상 교육·컨설팅 등 인적 역량 강화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6호).

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상인교육의 범위에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상점가에 디지털·AI 기반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됨.

2.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및 지원내용

- 서울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행사,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7월말 기준 전체 시장수 433개, 점포수 7만 3천 여개, 상인수 11만 3천여명, 상인회 355개가 운영중임.

< 서울시 전통시장 등 현황 >

(2025년 7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시 장 수	점 포 수	상 인 수	상인회 등록
계		433	73,538	113,449	355
전통 시장)	등 록 ²⁾	111	30,509	38,728	55
	인 정 ³⁾	127	16,692	30,582	122
상점가 ⁴⁾		63	11,712	25,264	61
골목형상점가 ⁵⁾		118	13,232	17,298	116
무등록 ⁶⁾		14	1,393	1,577	1

1)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됨.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3)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50개 이상으로

- 또한 서울시는 2025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258억 3천 9백여만원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2025년 서울시 전통시장 등 주요 지원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사업 내용	예산
합계		25,839
경영 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2,212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123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280
	전통시장 행사 지원	4,647
	전통시장 판로개척 지원	200
	청년몰 활성화 지원	120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2,122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565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783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1,97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건립)	2,80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주차장 개보수)	9

※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540백만원, 주차환경개선(주차장 이용보조) 373백만원 별도

3.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AI 기술 지원의 근거 마련

- 안 제4조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사업 범위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5) 전통시장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2,000㎡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
- 6) 전통시장으로 등록(인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장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상인들의 경영 효율화와 소비자 안전·편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온라인 판매, 스마트 CCTV, AI 기반 화재예방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전통시장 등에 접목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등의 지원사업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전통시장 등의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그리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등의 ▶매출·고객관리의 효율화, ▶온라인·모바일 판매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관리 등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의 경영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⁷⁾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⁸⁾에는 개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 상거래

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생략)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6. ~ 13. (생략)

③ (생략)

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6. (생략)

현대화, 디지털기술 역량 강화 교육 등과 관련한 지원 근거를 이미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4조 지원사업의 각 호에 규정된 지원사업(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화재·풍수해예방 등)을 통해서도 디지털·AI 기술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나. 상인교육, 자문, 인력양성 사업에 디지털 역량 강화 추가

- 안 제5조는 상인교육과 자문, 인력양성(이하 “교육 등”)을 위한 지원 범위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상인교육 등)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u>촉진</u>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상인교육 등) ① ----- ----- <u>촉진, 디지털</u> <u>역량 강화</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이는 안 제4조를 통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AI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교육 등에 있어서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포함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지원사업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을 추가하면서 상인교육에 대해서는 AI 기술 역량 교육은 제외하고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교육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과 교육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등에도 디지털·AI 기술 역량 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이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의2.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7의3.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교육**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김혜진	02-2180-8057